

의안번호	2217411
의 퇴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6.7.3.
추 계 번호	26D140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유족의 재혼 시 퇴직유족연금액과 수급자와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7,400만원, 2032년 4억 3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1억 7,500만원(연평균 2억 3,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유족의 재혼 시 연금수급권 유지 (안 제57조의2 신설)	74	152	232	314	403	1,175	235

주: 1. 유족의 재혼 시 연금수급권 유지(안 제57조의2 신설)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본 추계는 최근 3년(2022~2024년) 재혼으로 연금수급권이 상실된 건수 및 평균 연금월액 실적치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7조의2 (재혼에 따른 퇴직유족 연금의 지급 특례) 신설	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재혼 이전에 지급된 퇴직유족연금액에 수급자와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 록 규정 ※현행법은 재혼 시에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57조의2 (재혼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지급 특례) 신설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현행법에서는 퇴직유족연금을 수급 중인 유족이 재혼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이 상실되어 유족연금¹⁾을 받지 못함
- 개정안은 유족이 재혼 시에 퇴직유족연금액과 수급자와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이 지속되어 지급대상자가 되는 인원은 추계기간 동안 매년 6명이 발생하고, 혼인기간에 따라 20%~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재혼으로 연금수급권이 상실된 사람은 연평균 6명
 - 현재 퇴직연금수급자의 대부분은 2016년 공무원연금개혁 이전의 제도가 적용되었고, 해당 제도에서 연금수급을 위한 재직기간이 최소 20년 이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유족연금액에 재혼 후 지급률을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80%, 10년 이상 15년 미만 60%, 5년 이상 10년 미만 40%, 5년 미만 20%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²⁾

1) 유족연금은 퇴직연금의 60%를 지급하고 있음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6.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3%	2.1%	2.3%	2.0%	2.0%	2.0%	2.0%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족이 재혼 시에 혼인기간별 퇴직유족연금 지급률을 적용한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
- 본 추계에서는 연도별 지급대상자 수, 1인당 평균 연금월액, 퇴직유족연금 지급률, 12개월을 곱하여 산출
 - (지급대상자 수) 2028년 6명, 2032년 30명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개정안에 따라 매년 6명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하고 추계기간 동안 사망률 적용 없이 유족연금을 계속 지급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연도별로 지급대상자 수는 누적적으로 발생
 -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이혼자의 혼인기간별 비율이 5년 미만 16.4%, 5년 이상 10년 미만 17.3%, 10년 이상 15년 미만 15.9%, 15년 이상 20년 미만 13.8%, 20년 이상 36.6%
 - 매년 6명의 지급대상자 수에 국가데이터처의 이혼자 혼인기간별 비율을 곱하여 혼인기간별 대상자 수를 추정

[표 2] 지급대상자 수: 2028~2032년

(단위: 명)

	2028	2029	2030	2031	2032
20년 이상	2	4	6	8	10
15년 이상 20년 미만	1	2	3	4	5
10년 이상 15년 미만	1	2	3	4	5
5년 이상 10년 미만	1	2	3	4	5
5년 미만	1	2	3	4	5
합계	6	12	18	24	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인당 평균 연금월액) 2028년 155만원, 2032년 168만원으로 추정
 -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재혼으로 연금수급권이 상실된 사람의 평균 연금월액은 2024년 기준 142만원으로 추정

- 퇴직유족연금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상승하므로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값을 활용하여 추정

[표 3] 1인당 평균 연금월액: 2028~2032년

(단위: 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1인당 평균 연금월액	155	158	161	164	16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유족의 재혼 시 퇴직유족연금액과 수급자와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7,400만원, 2032년 4억 3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1억 7,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지급 대상자 수 (a, 명)	20년 이상	2	4	6	8	10	-
	15년 이상 20년 미만	1	2	3	4	5	
	10년 이상 15년 미만	1	2	3	4	5	
	5년 이상 10년 미만	1	2	3	4	5	
	5년 미만	1	2	3	4	5	
	소계	6	12	18	24	30	
1인당 평균 연금월액(b, 만원)		151	154	157	160	163	-
추가 재정소요 (=a×b×지급률×12개월, 백만원)	20년 이상	37	76	116	157	202	588
	15년 이상 20년 미만	15	30	46	63	81	235
	10년 이상 15년 미만	11	23	35	47	60	176
	5년 이상 10년 미만	7	15	23	31	40	116
	5년 미만	4	8	12	16	20	60
	합계	74	152	232	314	403	1,175

주: 지급률은 20년 이상인 경우 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80%, 10년 이상 15년 미만 60%, 5년 이상 10년 미만 40%, 5년 미만 20%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최근 3년(2022~2024년) 재혼으로 연금수급권이 상실된 건수 및 평균 연금월액 실적치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